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999. 9. 16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1999년 8월 30일 제출
- 회부 : 1999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령이 개정(99.1.18 법률제5634호, 99.5.10 대통령령제16294호)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 (안 제2조제2항 별표2)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로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6조)
- 강사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 (안 제8조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조항 신설 (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조항 신설 (안 제11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개정·정비됨에 따라
부제교습 회수 폐지등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일부 내용이 정비되었고,

강사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우수학원 지정·육성 등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